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환경산림자원국 보조금분야 특정감사 －

2023. 4.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6건		3	3	3	2,598	0	0	0	0	
1	A	A	A	과	명절휴가비 원천세징수 미이행 및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1	-	1	2,385	-	-	-	-
2	A	A	A	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1	-	1	81	-	-	-	-
3	B	B	B	과	지방보조금 강사료산정 및 회계 처리 부적정		-	1	-	-	-	-	-	-
4	E	E	E	과	□□□□□ □□□□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		1	132	-	-	-	-
5	E	E	E	과	□□□□□ □□□□사업 집행 부적정		-	1	-	-	-	-	-	-
6	E	E	E	과	□□□□□□□ □□□□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		-	1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1. 명절휴가비 원천징수 미이행 및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시정)	1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시정)	7
3. 지방보조금 강사료산정 및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10
4. ○○○○○○ ○○○○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시정)	15
5. ◇◇◇◇◇◇ ◇◇◇◇사업 집행 부적정(주의)	21
6. □□□□□□□ □□□□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주의)	24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명절휴가비 원천세징수 미이행 및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AAA과에서는 경상북도의 ○○○○○○의 ○○○ ○○를 통하여 ○○ ○○○
 ○○ ○○ ○○○ ○○ ○○ ○○ ○○ ○ ○○○ ○○ ○○○○○○을 위하여 보
 조사업자 WWW에 [표1]과 같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1] 2019년~2021년 '○○○○○○○○○○○○○○' 운영비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일 (사업기간)	보조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합 계			540,000	540,000	-		
2019	○○○○○○○	WWW	2019.▽.▽. (2019.1월~12월)	180,000	180,000	-	○○○○○○○	
2020	○○○○○○○		2020.△.△. (2020.1월~12월)	180,000	180,000	-	○○○○○○○ ○인력운영비,	
2021	운영비		2021.◇.◇. (2020.1월~12월)	180,000	180,000	-	기타경비 등	

※ AAA과 자료 재구성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제16855호, 제16857호) 제32조의5,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제16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명절휴가비 원천징수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11호, 제92호, 제108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제16834호, 제17477호) 제20조, 제127조, 제128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 제30395호, 제31380호) 제185조, 제194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임금·상여·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제16855호, 제17757호) 제103조의13부터 제103조의15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임금과 상여(명절휴가비) 등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 WWW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보조금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명절휴가비에 대해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개

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 지도점검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가 [표 2]와 같이 근로소득인 명절휴가비를 3년간 총 22,792천원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정산·확정하였다.

[표2] 명절휴가비(근로소득) 원천세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요	성명	지급액	원천세 징수 여부	비고
합계			22,791,950		
2019.02.01.	□□□ 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KKK	1,328,250	X	*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세임
		BBB	881,750	X	
2019.09.10.	□□□ 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KKK	1,723,750	X	
		CCC	1,328,250	X	
		PPP	850,950	X	
2020.01.23.	2020년 □□□ 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KKK	1,777,500	X	
		CCC	1,413,500	X	
		PPP	909,000	X	
2020.09.29.	2020년 □□ 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KKK	1,777,500	X	
		CCC	1,413,500	X	
		PPP	909,000	X	
2021.02.10.	2021년 □□□ 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KKK	1,800,500	X	
		CCC	1,475,000	X	
		PPP	964,000	X	
2021.09.17.	2021년 □□ 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KKK	1,800,500	X	
		CCC	1,475,000	X	
		PPP	964,000	X	

※ AAA과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표3]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납부되어야 할 정당한 세금 2,384,850원이 납부되지 않게 되었다.

[표3] 2019년~2021년 명절휴가비 지급 해당월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 현황

(단위 : 원)

연 월	항 목	합 계	PPP	BBB	KKK (공제가족2명)	CCC	비 고
2019.2.	기본급+명절휴가비	6,629,500	3,984,250	2,645,250			
	소득세+지방소득세	288,090	229,120	58,970			
2019.9.	기본급+명절휴가비	11,708,350	3,984,250		5,171,250	2,552,850	
	소득세+지방소득세	658,050	229,120		378,430	50,500	
2020.1.	기본급+명절휴가비	12,300,000	4,240,500		5,332,500	2,727,000	
	소득세+지방소득세	736,780	267,300		402,980	66,500	
2020.9.	기본급+명절휴가비	12,300,000	4,240,500		5,332,500	2,727,000	
	소득세+지방소득세	736,780	267,300		402,980	66,500	
2021.2.	기본급+명절휴가비	12,718,500	4,425,000		5,401,500	2,892,000	
	소득세+지방소득세	791,500	293,730		415,260	82,510	
2021.9.	기본급+명절휴가비	12,718,500	4,425,000		5,401,500	2,892,000	
	소득세+지방소득세	791,500	293,730		415,260	82,510	
합계	기본급+명절휴가비	68,374,850	25,299,500	2,645,250	26,639,250	13,790,850	
	(소득세+지방소득세) (a)	4,002,700	1,580,300	58,970	2,014,910	348,520	
기 납부세액 (b)		1,617,850	550,250	0	942,910	124,690	기본급에 대한 세액
추가 납부 해야 할 세액 (a)-(b)		2,384,850	1,030,050	58,970	1,072,000	223,830	

※ AAA과 자료(WWW 자료 포함) 재구성

2.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6415호, 제17326호, 제1817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5664호, 제17326호) 제3조, 제4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31140호)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¹⁾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제6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지급토록 지도·관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이 관련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WWW가 2019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3명에 대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표4]와 같이 지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서류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고 정산·확정하였다.

[표4] 퇴직금 중간정산 실지급액 및 3년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적용 퇴직금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성 명	실 지급액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 ²⁾	비 고
합 계	2019년~2021년 퇴직금	소 계	23,573,600	25,429,285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를 반영하여 산정
		KKK	10,112,350	10,915,577	재직일수 1,044일
		PPP	8,433,000	8,882,203	재직일수 1,037일
		CCC	5,028,250	5,631,505	재직일수 1,006일
2019.12.24.	2019년 □□□ 직원 퇴직금 지급	KKK	2,956,350		
		PPP	2,656,000		
		CCC	1,282,250		
2020.12.24.	2020년 □□□ 직원 퇴직금 지급	KKK	3,555,000		
		PPP	2,827,000		
		CCC	1,818,000		
2021.12.24.	2021년 □□□ 직원 퇴직금 지급	KKK	3,601,000		1일 평균임금 : 127,209원
		PPP	2,950,000		1일 평균임금 : 104,211원
		CCC	1,928,000		1일 평균임금 : 68,108원

※ AAA과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적정하지 못하게 지급하여,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보다 실 지급한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어 근로자의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AAA과장은

① 앞으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이행 등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명절휴가비 지급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384,85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시 지급토록 하는 등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2)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AAA과에서는 ◇◇ ◇◇ ◇◇ ◇◇◇ 및 ◇◇◇◇의 ◇◇ ◇◇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MMM에 [표1]과 같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20년~2021년 □□□□ □□□□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일 (사업기간)	보조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참가비 (수익금)		
	합 계			20,150	15,500	3,450	1,200		
2020	□□□□ □□□□	MMM	2020.△.△. (2020.6월~12월)	9,200	8,000	1,200		○○○, ○○○○○, ○○○○ 등	
2021	□□□□ □□□□		2021.▽.▽. (2021.6월~12월)	10,950	7,500	2,250	1,200	○○○, ○○○○○, ○○○○ 등	

※ AAA과 자료 재구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제174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법률 제17339호, 제18370호) 제21조, 제127조 및 제128조에 의하면 상금, 현상금, 포상금, 원고료, 강사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22호, 제31740호) 제87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제17769호) 제103조의13부터 제103조의15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 MMM이 ‘□□ □□ □□□□’ 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상금, 포상금 등 기타소득을 125,000원 이상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관령 법령에 따라 상금, 포상금 등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2020년, 2021년 □□ □□ □□□□ 사업 추진 시 기타소득인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표2]와 같이 관련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시정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확정하였다.

[표2] 2020년~2021년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단위 : 원)

연 도	지 출 결 의				미공제 원천세			정당한 지급액	비고
	지출일	내 용	채 주	지급액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930,480	81,870	74,430	7,440	848,600	
2020	2020.11.23.	○○ ○○ 포상금	AAA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2020.11.23.	○○ ○○ 포상금	BBB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2021	2021.12.8.	○○ ○○ 포상금	CCC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2021.12.8.	○○ ○○ 포상금	DDD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2021.12.8.	○○ ○○ 포상금	EEE	230,480	20,270	18,430	1,840	210,200	원단위절사

※ AAA과 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사업으로 납부되어야 할 정당한 세금 81,870원이 납부되지 않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AAA과장은

앞으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이행 등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포상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1,87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강사료산정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BBB과
 내 용

BBB과에서는 ○○○○ ○○○○○○ ○○○○○○ ○○ 지원을 위하여 [표1]과 같이 SSS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19년~2022년 ◆◆◆◆ ◆◆◆◆◆◆ ◆◆◆◆◆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일 (사업기간)	정 산 확정일	보조사업비			비 고
					계	도비	자부담	
	합 계				24,000	24,000	-	
2019	2019 ◆◆◆◆◆◆◆◆◆◆	SSS	2019.▽.▽. (2019.12.12~12.13.)	2020.1.2.	10,000	10,000	-	
2021	2021 ◆◆◆◆◆◆◆◆◆◆		2021.△.△. (2021.12월)	2023.2.7.	7,000	7,000	-	
2022	2022 ◆◆◆◆◆◆◆◆◆◆		2022.◇.◇. (2022.12월)	2023.2.7.	7,000	7,000	-	

※ BBB과 자료 재구성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법률 제16855호, 법률 제16857호) 제32조의5,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제16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보조금 강사료산정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 제174호, 제221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제214호, 제248호) 제4조에 따르면 교육 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하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는 ‘대학의 교수’와 ‘기업·기관·단체의 임원’의 일반강의 강사수당은 최초 1시간 25만원으로, “공직자 등”(공무원, 대학의 교수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며, 다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여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적용토록 제시하고, 사업종료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강사수당 등을 제시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하였는지, 여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SSS에게 보조사업 강사수당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보조사업자가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표2]와 같이 산출근거내역이 없거나 과다하게 지출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확정하였다.

[표2] 강사수당 지출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강사수당 지급내역						강사영수증	지급기준 강사수당 ³⁾		비 고
지 급 일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의 시간	강사 수당	원천징수	지급내역	적용대상	강사 수당	
합 계				1,000	88			750	
2019.12.20.	QQQ	○○○○○○ ○○	60분	400	35.2	초청강사 특강수당	○○○○○ 1급	250	과다지급
2021.12.24.	QQQ	○○○○○○ ○○	50분	300	26.4	특강수당 (수당+여비)	○○○○○ 1급	250	산출근거 미첨부
2022.12.27.	ZZZ	▲▲▲▲▲ ▲▲	50분	300	26.4	특강수당	▲▲ 1급	250	

※ BBB과 자료 재구성

2.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 제174호, 제221호)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며,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표1]의 지방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 [보조사업 집행]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의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따름

것인지 심사하면서, 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이 보조금 통장에서 채주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조사업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표3]과 같이 지방보조금을 지출하면서 보조금 통장에서 채주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괄 대체이체⁴⁾(총 4,934,300원)를 통해 다수의 지출 건을 일괄 무통장입금(총 4,846,300원)하여, 대체이체와 무통장입금에 따라 차액(총 88,000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차액에 대한 지출증빙 없이 보조사업을 정산·확정하였다.

[표3] 지방보조금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사업 연도	○○ ○○○ 개최일	지 출 결 의				보조금통장 대체이체		무통장입금			지출증빙 미첨부 (a)-(b)
		번 호	적 요	금 액	합 계	일자	금액(a)	일자	건수	금액(b)	
					4,934,300		4,934,300			4,846,300	88,000
2019	2019. 12.○. ~ 12.◇.	증201912●● -●●●●호	□□□□ 초청 강사 특강수당 및 □□□□ 심 사수당 지급	800,000	800,000	2019. 12.20.	800,000	2019. 12.20.	5건	764,800	35,200
2021	2021. 12.▽.	증202112●● -●●●●호	2021 ○○○○ ○○○○○○○ ○○○○○ 특 강강사 수당	300,000	2,142,500	2021. 12.24.	2,142,500	2021. 12.24.	3건	2,116,100	26,400
		증202112●● -●●●●호	2021 ○○○○ ○○○○○○○ ○○○○○ 행 사경비(자료집 제작 등)	1,842,500							
2022	2022. 12.△.	증202212●● -●●●●호	2022 ○○○○ ○○○○○○○ ○○○○○ 특 강 강사수당	300,000	1,991,800	2021. 12.24.	1,991,800	2022. 12.27	4건	1,965,400	26,400
		증202212●● -●●●●호	2022 ○○○○ ○○○○○○○ ○○○○○ 행 사 운영 경비(자 료집 제작 등)	1,691,800							

※ BBB과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강사수당 150,000원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보조금의

4) 보조금통장 내역(사본)에 해당금액 이체대상이 없음

일괄 대체이체로 인해 발생한 차액 88,000원에 대해서는 2023. 2. 20. 감사일 현재까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감사 기간 중 원천세로 납부된 것을 확인 하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BBB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강사료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기준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시고, 사업비는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EEE과
내 용

EEE과에서는 □□ □□□□□들의 □□□□ □□□ □□ 및 □□□ 지원을 위하여 [표1]과 같이 ○○○○○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1] ○○○○○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 업 명	보조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계	도 비	자부담		
2021	UUU	○○○○○ ○○○○사업	12,800	5,000	7,800	- □□□□□□ □□ - □□□□□□ □□□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5호)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제16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강사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소득세법(법률 제17758호)」 제21조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5호)」 제87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를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제103조의13 제1항에 의하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2021년 ○○○○○ ○○○○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부담금의 집행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강사료 등에 대해서 125,000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100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하여 관한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EEE에서 SSS 외 2명의 강사수당 총 1,500,000원(자기부담금)을 지급하면서 [표2]와 같이 소득세 120,000원, 지방소득세 12,000원, 총 132,00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방보조금액을 정산·확정 통보⁵⁾하였다.

[표2]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단위 : 원)

연번	예금주	이체일자	지급내용	총 지급액	미공제 원천세			정당 지급액
					합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3명			1,500,000	132,000	120,000	12,000	1,368,000
1	SSS (LLL)	2021.11.24.	강사수당	400,000	35,200	32,000	3,200	364,800
2	TTT	2021.11.24.	"	500,000	44,000	40,000	4,000	456,000
3	VVV	2021.12.17.	"	600,000	52,800	48,000	4,800	547,200

그 결과, 현재까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된 강사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2,000원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2. 보조사업 변경승인 절차 및 정산 부적정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5호)」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인 EEE가 자기부담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5) 「2021년 ○○○○○ ○○○○사업」 정산·확정 및 이자액 ○○ ○○ / EEE과-◇◇◇◇호(2022.◇.◇.)

장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추진 상태 및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 현황 등 변경신청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승인을 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집행한 내용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심사한 후 정산·확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 ▷▷▷ ▷▷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표3]과 같이 사업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경비를 배분하여 집행하거나,

□□□□ □□□ □□ 및 □□□□□□ □□□ □□의 축소 운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5,750,000원의 물건비(◇◇◇◇◇◇ ◇◇)를 사업내용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21.12.17.)한 후 변경신청(‘21.12.23.)을 하였음에도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변경승인 통보⁶⁾하였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사업완료 후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집행한 내용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면서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건비(◇◇◇◇◇◇ ◇◇)를 먼저 집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자료 등 지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데도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 통보⁷⁾하였다.

6) 2021년 ○○○○○ ○○○○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 EEE과-○○○○○○호(2021.○.○.)

7) 「2021년 ○○○○○ ○○○○사업」정산·확정 및 이자액 ○○ ○○ / EEE과-▽▽▽▽호(2022.▽.▽.)

[표3] 2021년 ○○○○○ ○○○○사업 변경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업내용	당초 계획(교부결정)			변경 집행			집행 내역	
		계	보 조	자부담	계	보 조	자부담	일 자	내 용
	합 계	12,800,000	5,000,000	7,800,000	12,800,000	5,000,000	7,800,000	-	
○○○○ ○○○ ○○ (11.30 ~121)	소 계	7,590,000	3,400,000	4,190,000	5,712,655	4,264,770	1,447,885	-	
	홍보비(현수막)	240,000	0	240,000	114,400	114,400	0	11.24~11.30	현수막
	진행비 (○○○○○○교육비)	1,500,000	0	1,500,000	108,375	108,375	0	11.18	유류비(○○○○) 입장료(○○○○)
	진행비 (○○○○○○식대)	250,000	0	250,000	254,610	254,610	0	9.27~11.18	식대(회의) 식대(○○○○)
	진행비 (○○임차료)	2,000,000	2,000,000	0	1,200,000	1,200,000	0	11.24~11.30	버스임차료
	진행비 (○○○○○○○○○○)	3,400,000	1,400,000	2,000,000	2,232,500	2,232,500	0	11.24~12.03	○○료 ○○○○료 식대(석식,조식) ○○○○비,간식
	예비비 (잡비기타제비용)	200,000	0	200,000	901,270	354,885	546,385	11.24~11.30	기념품, 완구류 보험료, 교재 등
	인건비 (강사비)				900,000	0	900,000	11.24~11.30	강사료(2건)
	이체수수료				1,500	0	1,500	11월중	이체수수료
○○ ○○○○ ○○○ (12.28)	소계	5,210,000	1,600,000	3,610,000	7,087,345	735,230	6,352,115	-	
	홍보비 (현수막)	160,000	0	160,000				-	
	강사비	2,750,000	0	2,750,000	600,000	0	600,000	12.17	강사료(1건)
	진행비 (○○○○자료 및 ○○○○등)	1,000,000	600,000	400,000	407,345	407,345	0	12.17/12.27	명찰, 문구류 ○○○○자료집
	진행비 (식대및간식비)	1,000,000	1,000,000	0	327,500	327,500	0	12.28	○○○식대
	예비비 (잡비기타제비용)	300,000	0	300,000				-	
	이체수수료				2,500	385	2,115	12월중	이체수수료
	물건비(○○○○)				5,750,000	0	5,750,000	12.17	○○○○○○ *

* 당초 교부결정 시 사업계획에 없던 물건비 집행(○○○○○○ ○○)

- ○○○○○ ○○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보조금전용계좌 이체일자 : 2021. 12. 17.

- 사업내용 변경신청 및 승인일자 : 2021. 12. 23.

그 결과, 정상적인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교부결정 시 계획한 ○○○ ○○ 및 ○○○ ○○가 아닌 ○○○○○ 구입으로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 시정 등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확정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EEE과장은

① 앞으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이행 및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강사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2,00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및 정산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사업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EEE과
 내 용

EEE과에서는 ▽▽ ▽▽▽▽▽들의 ▽▽▽▽ ▽▽ 지원을 위하여 [표1]과 같이 2020년 ◇◇◇◇◇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1] ◇◇◇◇◇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사업 내용	비고
		계	도 비	자부담		
2020	FFF	21,000	16,000	5,000	-▽▽ ▽▽▽▽▽들의 ▽▽ ▽▽ ▽▽ 지원 -▽▽ ▽▽ ▽▽를 통한 ▽▽▽▽·▽▽▽▽ ▽▽▽▽ 등에 대한 ▽▽ ▽▽, ▽▽▽ ▽ ▽ 및 ▽▽ ▽▽ ▽▽▽ ▽▽ 등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7호)」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V. [1] 지방보조금 용도의 사용금지(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을 보조금 용도외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7호)」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 후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사업내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후 변경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들의 ▽▽ ▽▽ ▽▽ 지원을 위한 「2020년 ◇◇◇◇◇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 ▽▽으로 당초 계획된 ▽▽▽▽가 ▽▽되지 못한 점을 인지하였는데도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내용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 ▽▽으로 ▽▽▽▽▽ ▽▽▽▽가 ▽▽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당초 교부결정 된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16,000,000원의 ▽▽▽▽를 ▽▽할 수 있도록 협의⁸⁾해 준 사실이 있다.

8)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EEE과 보조사업 담당자와 보조사업자간 회의를 거쳐 구두 협의하여 ▽▽▽▽ ▽▽ ▽▽함

[표2] 사업계획(보조금 교부결정) 미반영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당초 계획(교부결정)				변경 집행			
		항 목	계	보조금	자부담	항 목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1,000	16,000	5,000		21,000	16,000	5,000
2020년 ◇◇◇◇◇ ◇◇◇◇사업	▽▽▽▽ ▽▽ ▽▽▽▽▽▽▽ ▽▽ 지원	▽▽▽ ▽▽	16,000	16,000	0	▽▽▽▽ ▽▽▽▽	16,000	16,000	0
		▽▽▽	4,000	0	4,000	▽▽▽	5,000	0	5,000
		▽▽▽ (▽▽▽▽)	1,000	0	1,000				

그 결과, 정상적인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교부결정 시 계획한 ▽▽ ▽▽▽▽▽▽▽ ▽▽▽가 아닌 ▽▽▽▽ ▽▽으로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 시정 등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EEE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내용이 취소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변경 시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EEE과
 내 용

경상북도 EEE과에서는 ○○ ○○ ○○○○○○○○의 ○○○○ 및 ○○○○
 ○○을 위하여 [표1]과 같이 □□□□□□□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1] □□□□□□□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계	도 비	자부담		
2019	KKK	30,000	30,000	0	-○○○○○○○○○ ○○○○ 지원 -○○ ○○의 ○○○○ ○○을 통한 ○○○ ○○ ○○ ○○	
2020		24,000	24,000	0	-○○○○○○○ ○○○ ○○○○○○○○ 및 ○○○ ○○○ ○○○○·○○○	
2021		24,000	24,000	0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채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의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고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 KKK에서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또한, 사업완료 후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일괄인출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표2]와 같이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인건비 지급, ○○○○ 계좌로 이체 후 숙박비 집행, 연말에 여러 채주에게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등 3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21년의 경우 10. ▽. ~ 10. △. 기간 중 실시된 ○○○ ○○○○ ○○ ○○ ○ ○○에 대해서 연말(12.30)이 되어서야 보조금을 일괄 인출한 후 총 4건으로 무통장입금(총 6,520,000원)하였고, 이에 대한 계좌이체 증빙자료를 실적보고서에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확정⁹⁾하였다.

9) 「2021년 □□□□□□ □□□□사업」정산·확정 및 이자액 □□ □□ / EEE과-○○○○호(2022.○.○.)

[표2] 보조금 일괄인출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 도	보조금 일괄인출		집행내용(무통장 입금)	집행금액	비 고
	일 자	금 액			
2019	11. 08.	3,300,000	○○○ ○○인력 인건비(AAA)	1,100,000	
			○○○ ○○인력 인건비(BBB)	1,100,000	
			○○○ ○○인력 인건비(CCC)	1,100,000	
	11. 15.	550,000	○○인력 숙박비(○○○○○ 계좌로 이체후 집행)	550,000	
	12. 20.	18,060,000	일괄인출 후 ○○○○○○으로 이체	18,060,000	
	12. 31.	3,685,500	○○수당(GGG)	150,000	
			○○수당(HHH)	150,000	
			○○수당(NNN)	150,000	
			○○수당(QQQ)	150,000	
			인쇄비(WWW)	1,585,500	
			시식용○○○(TTT)	500,000	
			시식용○○○(SSS)	500,000	
			배너(UUU)	500,000	
2020	12. 17.	19,500,000	일괄인출 후 ○○○○○○으로 이체	19,500,000	
2021	12. 17.	17,480,000	일괄인출 후 ○○○○○○으로 이체	17,480,000	
	12. 30.	6,520,000	○○○ ○○ 렌탈(VVV)	3,992,000	실적보고서에 계좌이체 증빙자료 누락*
			홍보물품 제작(ZZZ)	828,000	
			홍보용 ○○○(RRR)	500,000	
			홍보용 ○○○(XXX)	1,200,000	

* 감사기간 중 보조사업자에게 누락된 계좌이체 증빙자료(채주에게 무통장입금한 전표) 제출받아 확인함.

그 결과, □□□□□□□ □□□□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조치할 사항 EEE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는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